##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54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모경종·황명선·김병기

주철현 · 노종면 · 김한규

송재봉 • 문금주 • 김남근

김준혁 • 이광희 • 박정현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·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 안감이 커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·폭행·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,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고,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·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·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

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,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·석궁 등의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13조 및 제16조 등).

법률 제 호

#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제3호의2"로, "5년"을 각각 "7년"으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.

- 3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
  - 나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·제2항,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
  - 다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
  - 라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
  - 마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

제16조의 제목 "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"을 "(총포・도검・석궁 소지

허가의 갱신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제12조에 따라 도검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"5년마다"를 "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접수된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도검·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검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 행일에 제16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 개 정 아 제13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제13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소지 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소지 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자의 결격사유 등) ①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사 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<신 설>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 <u>나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•</u> 제2항, 제260조 및 제261 조의 죄 다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

4. (생략)

5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<삭 제>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. (생략)

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 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 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 나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 · 제2항, 제260조 및 제26 1조의 죄 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 〈삭 제〉

제8조의 죄

마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 항 및 제2항의 죄

4. (현행과 같음)

6.	(현	행과	같음	)			
6º	12.	제3호	호의2-				-
-							-
-					- <u>7년</u> -		-
-							-
-							-
-						<u>7년</u>	<u> </u>
-							
<u>&lt;</u>	1	제>					
<u>&lt;&gt;</u> 2	\ <u></u>	제>					

호에 관한 법률 제7조 <u>및 제</u>8조의 죄

6의3. ~ 7. (생략)

② ~ ③ (생 략)

제16조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

① (생 략)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(생 략)
  - (5) 총포·석궁의 소지허가 또 (5) ------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 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: 2. -----5년마다. 다만, 제47조제2항 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 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 을 유예한다.

6의3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총포・도검・석궁 소지허 가의 갱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・석궁 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제1항 및 제2항-----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 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 청 전까지. -----

⑥ (생략)

⑥ (현행과 같음)